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
----------	---

제출연월일 : 2006.1. 11.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동금동 125-1번지의 4필지가 구획정리지구에 미포함되어 주민에게 불편과 혼동을 초래함으로 이를 현실여건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현행 행정리중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동서금동 관할구역 일부를 향촌동에 편입(안 별표)

현행			
구분	지번	지목	면적(m ²)
계	5필지		579
동금동	119	전	29
동금동	119-1	도로	26
동금동	125-1	전	249
동금동	125-3	도로	77
동금동	535-5	도로	198

⇒

개정(안)
향촌동

나.곤양면,서포면 관할구역을 정비(안 별표)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05.12. 5~12. 27)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별표 중 곤양면, 서포면, 동서금동, 향촌동 관할구역란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별표 중 동금동 119번지, 119-1번지, 125-1번지, 125-3번지, 535-5번지는 향촌동 신지번으로 변경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할구역
곤양면	성내리	성내리 일원
	남문외리	남문외리 일원
	서정리	서정리 일원
	무고리	무고리 일원
	맥사리	맥사리 일원
	송전리	송전리 일원
	대진리	대진리 일원
	환덕리	환덕리 일원
	묵곡리	묵곡리 일원
	홍사리	홍사리 일원
	가화리	가화리 일원
	검정리	검정리 일원
	중항리	중항리 일원
	서포면	금진리
내구리		내구리 일원
외구리		외구리 일원
조도리		조도리 일원
구랑리		구랑리 일원
자혜리		자혜리 일원
구평리		구평리 일원
선전리		선전리 일원
	비토리	비토리 일원
	다평리	다평리 일원

읍면동명칭	관 할 구 역
동서금동	동금동(동금동 119번지, 119-1번지, 125-1번지, 125-3번지, 535-5번지를 제외한 지역), 서금동 일원
향촌동	봉남동, 이금동, 이홀동, 궁지동, 사등동, 향촌동 일원, (동금동 119번지, 119-1번지, 125-1번지, 125-3번지, 535-5번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읍면동 명 칭	리동 명칭	관할구역	읍면동 명 칭	리동 명칭	관할구역
곤양면	서정리	<p><u>서정리 일원</u></p> <p><u>서포면 외구리 255번지부터 295번지까지, 295의 1번지, 260번지</u></p>	곤양면	서정리	<p><u>서정리 일원</u></p>
	가화리	<p><u>가화리 일원</u></p> <p><u>650번지부터 654번지까지, 664번지</u></p> <p><u>부터 680번지까지, 685번지부터 957번지까지, 959번지일부, 1004번지</u></p> <p><u>1005번지부터 1007번지까지, 1010번지부터 1019번지까지, 산 1의 1번지부터 산1의 5번지까지</u></p> <p><u>산2번지부터 산53번지까지, 산54의1번지, 산54의6번지, 산54의7번지, 산55의1번지, 산55의2번지, 산57의1번지, 산58번지부터 산73번지까지</u></p> <p><u>산75번지부터 산80번지까지</u></p> <p><u>산80의1번지부터 산80의3번지까지</u></p> <p><u>산81의1번지, 산81-2번지, 산82의1번지</u></p> <p><u>산82의3번지, 산83번지, 산85번지를</u></p> <p><u>제외한 지역</u></p>		가화리	<p><u>가화리 일원</u></p>
서포면	외구리	<p><u>외구리 일원 중</u></p> <p><u>255번지부터 295번지까지</u></p> <p><u>295의1번지, 260번지부터 266번지까지</u></p> <p><u>1232번지를 제외한 지역</u></p>	서포면	외구리	<p><u>외구리 일원</u></p>

관 련 법 령 발 취

[지방자치법]

第4條 (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 ①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할 때에는 法律로써 정하되, 市·郡 및 自治區의 管轄區域 境界變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하거나 그 名稱 또는 區域을 變更할 때에는 關係地方自治團體의 議會(이하 "地方議會"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投票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31, 2004.1.29>

③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의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廢置·分合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2005.3.24>

④ 里의 區域은 自然의 村落을 기준으로 하되, 그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⑤洞·리에 있어서는 行政能率과 住民便宜를 위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洞·리를 2개 이상의 洞·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洞·리를 하나의 洞·리로 운영하는등 行政運營上 洞·리(이하 "行政洞·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第5項의 行政洞·리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